

인천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나7042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9. 16 선고 2019나70424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단3390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

담당변호사 이승현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2020. 7. 22.

판결 선고2020. 9. 16.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가단339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280만 원¹⁾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다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원고의 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보수는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한되어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감사로 선임된 사람이 주식회사와 계약을 맺고 이사·감사로 취임한 경우에, 상법 제388조, 제415조에 따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에 의하여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감사가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그 업무를 다른 이사 등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사·감사로서 상법 제399조, 제401조, 제414조 등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거나 보수를 정한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이 무효이거나 또는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이 주주총회에서 그 이사·감사를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 내용과 달라 주주총회에서 한 선임 결의 및 보수지급 결의에 위배되는 배임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와 같은 소극적인 직무 수행 사유만을 가지고 그 이사·감사로서의 자격을 부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사·감사의 소극적인 직무 수행에 대하여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사·감사의 보수는 직무 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반대급부와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거나, 오로지 보수의 지급이라는 형식으로 회사의 자금을 개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사·감사로 선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청구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행사가 제한되고 회사는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보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때 보수청구권의 제한 여부와 제한 범위는,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가 제공하는 급부의 내용 또는 직무 수행의 정도, 지급받는 보수의 액수와 회사의 재무상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 등의 보수와의 차이,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사·감사를 선임한 목적과 선임 및 자격 유지의 필요성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13308 판결 참조).

2) 피고에게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가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므로,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 또는 피고의 직무 수행이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예정하였던 직무내용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3) 피고에 대한 보수가 현저히 균형을 잃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보수가 오로지 원고의 자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 수행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수 사이에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피고가 비록 대표이사로서 적극적으로 그 직책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2017. 1. 3.부터 2017. 9. 8.까지 원고의 유일한 대표이사로서 등기되어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서 정한 법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었다.

② 원고의 기존 사내이사이자 실경영주인 G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등기될 무렵 구금되어 있어, G로서는 구금시설 밖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원고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가 단순히 원고의 감사나 이사로 등기된 것이 아니라 G를 대신하여 원고의 유일한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상, 피고로서는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 자체로 원고에 대하여 일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G가 2017. 1. 11. 피고에게 보낸 편지에는 "대표자 명의를 곧 삭제시켜 줄게. 바로 교체는 안 되고 그 때 보신 J 대표에게 인계할 테니 다만 K회사 소송건만 끝나는 3월까지만 부탁할게"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피고가 직접 소송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소송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재환

판사송한도

판사박정미

1) 원고는 항소취지에 원고 패소 부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청구취지를 그대로 기재하였으나,
제1심에서 승소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항소하는 것으로 선택한다.